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 견본주택 방문 사전예약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안내

-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견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예약 방문으로 운영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등 분양관련 사항은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thefirst>)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일자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 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가족 1인 / 신원확인 서류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고객센터(031-852-980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31.**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2항 나목의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으로 현행 적용 되는 관계법령의 시행일과 본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 차이에 따른 관계법령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의정부시고시 제2012-153호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일(2012.12.07.)로 관계법령 적용 현장으로 현행 기준 법령 일자가 아닌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적용 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와 관련법령 준수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적용이 아닌 현행 법 기준으로 일부 적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청약신청 시 50p 유의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일반공급 |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없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 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thefirst)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단, 인지세법상 일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임.) 따라서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 제한 기간 | 1년 |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3.11.22.)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 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
| 일정 | 11월 13일(월) | 11월 14일(화) | 11월 15일(수) | 11월 22일(수) | 11월 23일(목) ~ 11월 28일(화) | 12월 05일(화) ~ 12월 07일(목)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10:00~17: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별도 안내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견본주택(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4)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 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재생과 - 11245호 (2023.10.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3번지 일원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2~32층 11개동, 총 832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408세대
 [특별공급 203세대(일반[기관추천] 40세대, 다자녀가구 40세대, 신혼부부 74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3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준공예정일 2025년 11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3000593 | 01 | 036.1818 | 36 | 36.1818 | 12.7698 | 48.9516 | 23.4586 | 72.4102 | 17.8534 | 68 | 5 | - | 11 | - | 17 | 33 | 35 | 3 |
| | | 02 | 059.8609A | 59A | 59.8609 | 19.9225 | 79.7834 | 38.8110 | 118.5944 | 29.0983 | 126 | 15 | 10 | 26 | 4 | 7 | 62 | 64 | 9 |
| | | 03 | 059.9661B | 59B | 59.9661 | 20.2943 | 80.2604 | 38.8792 | 119.1396 | 29.2723 | 17 | 2 | 2 | 3 | 1 | 1 | 9 | 8 | 1 |
| | | 04 | 059.9951C | 59C | 59.9951 | 20.0349 | 80.0300 | 38.8980 | 118.9280 | 29.1882 | 117 | 14 | 10 | 22 | 4 | 8 | 58 | 59 | 5 |
| | | 05 | 075.9085 | 75 | 75.9085 | 23.9948 | 99.9033 | 49.2155 | 149.1188 | 36.4364 | 24 | 2 | 4 | 3 | 1 | 2 | 12 | 12 | 3 |
| | | 06 | 084.9616 | 84 | 84.9616 | 25.9592 | 110.9208 | 55.0851 | 166.0059 | 40.4546 | 56 | 2 | 14 | 9 | 2 | 2 | 29 | 27 | 7 |
| 합계 | | | | | | | | | | | 408 | 40 | 40 | 74 | 12 | 37 | 203 | 205 | 28 |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비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비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이 인접건물 대지의 영향으로 대지면적이 변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약식 표기 | 공급 세대수 | 동호 | 층 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합계 | 계약시 | 1개월 이내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 지정일 | |
| | | | | | | | | | | 2024.05.20 | 2024.07.19 | 2024.09.20 | 2024.12.20 | 2025.04.18 | 2025.09.19 | | |
| 36 | 68 | 110동 3,4,5호 | 1층 | 3 | 56,172,000 | 125,028,000 | 181,200,000 | 10,000,000 | 8,120,000 | 18,120,000 | 18,120,000 | 18,120,000 | 18,120,000 | 18,120,000 | 18,120,000 | 54,360,000 | |
| | | | 2층 | 3 | 57,660,000 | 128,340,000 | 186,000,000 | 10,000,000 | 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55,800,000 |
| | | | 3층 | 3 | 58,590,000 | 130,410,000 | 189,000,000 | 10,000,000 | 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56,700,000 |
| | | | 4층 | 3 | 59,520,000 | 132,480,000 | 192,000,000 | 10,000,000 | 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57,600,000 |
| | | | 5~9층 | 15 | 60,419,000 | 134,481,000 | 194,900,000 | 10,000,000 | 9,490,000 | 19,490,000 | 19,490,000 | 19,490,000 | 19,490,000 | 19,490,000 | 19,490,000 | 19,490,000 | 58,470,000 |
| | | | 10~15층 | 18 | 61,287,000 | 136,413,000 | 197,700,000 | 10,000,000 | 9,770,000 | 19,770,000 | 19,770,000 | 19,770,000 | 19,770,000 | 19,770,000 | 19,770,000 | 19,770,000 | 59,310,000 |
| | | | 16층이상 | 23 | 61,907,000 | 137,793,000 | 199,700,000 | 10,000,000 | 9,970,000 | 19,970,000 | 19,970,000 | 19,970,000 | 19,970,000 | 19,970,000 | 19,970,000 | 19,970,000 | 59,910,000 |
| 59A | 126 | 102동2호 105동2,4,5호 107동1,2호 108동3,4호 111동1,3호 | 1층 | 1 | 120,311,000 | 267,789,000 | 388,100,000 | 10,000,000 | 28,810,000 | 38,810,000 | 38,810,000 | 38,810,000 | 38,810,000 | 38,810,000 | 38,810,000 | 116,430,000 | |
| | | | 2층 | 9 | 123,721,000 | 275,379,000 | 399,100,000 | 10,000,000 | 2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119,730,000 | |
| | | | 3층 | 10 | 125,705,000 | 279,795,000 | 405,500,000 | 10,000,000 | 30,550,000 | 40,550,000 | 40,550,000 | 40,550,000 | 40,550,000 | 40,550,000 | 40,550,000 | 121,650,000 | |
| | | | 4층 | 8 | 127,689,000 | 284,211,000 | 411,900,000 | 10,000,000 | 31,190,000 | 41,190,000 | 41,190,000 | 41,190,000 | 41,190,000 | 41,190,000 | 41,190,000 | 123,570,000 | |
| | | | 5~9층 | 5 | 129,673,000 | 288,627,000 | 418,300,000 | 10,000,000 | 31,830,000 | 41,830,000 | 41,830,000 | 41,830,000 | 41,830,000 | 41,830,000 | 41,830,000 | 125,490,000 | |
| | | | 10~15층 | 4 | 131,657,000 | 293,043,000 | 424,700,000 | 10,000,000 | 32,470,000 | 42,470,000 | 42,470,000 | 42,470,000 | 42,470,000 | 42,470,000 | 42,470,000 | 127,410,000 | |
| | | | 16층이상 | 89 | 133,641,000 | 297,459,000 | 431,100,000 | 10,000,000 | 33,110,000 | 43,110,000 | 43,110,000 | 43,110,000 | 43,110,000 | 43,110,000 | 43,110,000 | 43,110,000 | 129,330,000 |
| 59B | 17 | 111동2호 | 1층 | 1 | 119,784,000 | 266,616,000 | 386,400,000 | 10,000,000 | 28,640,000 | 38,640,000 | 38,640,000 | 38,640,000 | 38,640,000 | 38,640,000 | 38,640,000 | 115,920,000 | |
| | | | 2층 | 1 | 123,194,000 | 274,206,000 | 397,400,000 | 10,000,000 | 2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119,220,000 | |
| | | | 3층 | 1 | 125,178,000 | 278,622,000 | 403,800,000 | 10,000,000 | 30,380,000 | 40,380,000 | 40,380,000 | 40,380,000 | 40,380,000 | 40,380,000 | 40,380,000 | 121,140,000 | |
| | | | 4층 | 1 | 127,162,000 | 283,038,000 | 410,200,000 | 10,000,000 | 31,020,000 | 41,020,000 | 41,020,000 | 41,020,000 | 41,020,000 | 41,020,000 | 41,020,000 | 123,060,000 | |
| | | | 5~9층 | 5 | 129,115,000 | 287,385,000 | 416,500,000 | 10,000,000 | 31,650,000 | 41,650,000 | 41,650,000 | 41,650,000 | 41,650,000 | 41,650,000 | 41,650,000 | 124,950,000 | |
| | | | 10~15층 | 6 | 131,099,000 | 291,801,000 | 422,900,000 | 10,000,000 | 32,290,000 | 42,290,000 | 42,290,000 | 42,290,000 | 42,290,000 | 42,290,000 | 42,290,000 | 126,870,000 | |
| | | | 16층이상 | 2 | 133,083,000 | 296,217,000 | 429,300,000 | 10,000,000 | 32,930,000 | 42,930,000 | 42,930,000 | 42,930,000 | 42,930,000 | 42,930,000 | 42,930,000 | 42,930,000 | 128,790,000 |
| 59C | 117 | 102동1,3호 105동1,3호 108동1,2호 | 2층 | 5 | 123,845,000 | 275,655,000 | 399,500,000 | 10,000,000 | 29,950,000 | 39,950,000 | 39,950,000 | 39,950,000 | 39,950,000 | 39,950,000 | 39,950,000 | 119,850,000 | |
| | | | 3층 | 6 | 125,829,000 | 280,071,000 | 405,900,000 | 10,000,000 | 3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40,590,000 | 121,770,000 | |
| | | | 4층 | 6 | 127,813,000 | 284,487,000 | 412,300,000 | 10,000,000 | 31,230,000 | 41,230,000 | 41,230,000 | 41,230,000 | 41,230,000 | 41,230,000 | 41,230,000 | 123,690,000 | |
| | | | 5~9층 | 15 | 129,797,000 | 288,903,000 | 418,700,000 | 10,000,000 | 31,870,000 | 41,870,000 | 41,870,000 | 41,870,000 | 41,870,000 | 41,870,000 | 41,870,000 | 125,610,000 | |
| | | | 10~15층 | 18 | 131,781,000 | 293,319,000 | 425,100,000 | 10,000,000 | 32,510,000 | 42,510,000 | 42,510,000 | 42,510,000 | 42,510,000 | 42,510,000 | 42,510,000 | 127,530,000 | |
| | | | 16층이상 | 67 | 133,765,000 | 297,735,000 | 431,500,000 | 10,000,000 | 33,150,000 | 43,150,000 | 43,150,000 | 43,150,000 | 43,150,000 | 43,150,000 | 43,150,000 | 43,150,000 | 129,450,000 |
| 75 | 24 | 109동1,2호 111동4,5호 | 2층 | 4 | 153,357,000 | 341,343,000 | 494,700,000 | 10,000,000 | 39,470,000 | 49,470,000 | 49,470,000 | 49,470,000 | 49,470,000 | 49,470,000 | 148,4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3층 | 4 | 155,806,000 | 346,794,000 | 502,600,000 | 10,000,000 | 4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150,780,000 |
| | | | 4층 | 4 | 158,255,000 | 352,245,000 | 510,500,000 | 10,000,000 | 4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153,150,000 |
| | | | 16층이상 | 12 | 164,641,000 | 366,459,000 | 531,100,000 | 10,000,000 | 43,110,000 | 53,110,000 | 53,110,000 | 53,110,000 | 53,110,000 | 53,110,000 | 53,110,000 | 159,330,000 |
| 84 | 56 | 101동1,2호 103동1,2호 104동1,2호 106동1,2호 | 2층 | 7 | 169,229,000 | 376,671,000 | 545,900,000 | 10,000,000 | 44,590,000 | 54,590,000 | 54,590,000 | 54,590,000 | 54,590,000 | 54,590,000 | 54,590,000 | 163,770,000 |
| | | | 3층 | 8 | 171,926,000 | 382,674,000 | 554,600,000 | 10,000,000 | 45,460,000 | 55,460,000 | 55,460,000 | 55,460,000 | 55,460,000 | 55,460,000 | 55,460,000 | 166,380,000 |
| | | | 4층 | 8 | 174,654,000 | 388,746,000 | 563,400,000 | 10,000,000 | 46,340,000 | 56,340,000 | 56,340,000 | 56,340,000 | 56,340,000 | 56,340,000 | 56,340,000 | 169,020,000 |
| | | | 16층이상 | 33 | 182,745,000 | 406,755,000 | 589,500,000 | 10,000,000 | 48,950,000 | 58,950,000 | 58,950,000 | 58,950,000 | 58,950,000 | 58,950,000 | 58,950,000 | 176,850,000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자격 검증 등에 대한 판단 업무는 사업주체에서 실시합니다. 단, 주택 소유현황, 중복·재당첨 사실 확인 등 전산검색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이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이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 계약은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 합산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절사 또는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에 따른 인지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일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 | | | | | | |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36.1818 | 059.8609A | 059.9661B | 059.9951C | 075.9085 | 084.9616 |
| 약식표기 | 36 | 59A | 59B | 59C | 75 | 84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약식표기) | | 36 | 59A | 59B | 59C | 75 | 84 | 합계 | |
|----------------------|------------------------|-------|-----|-----|-----|----|----|-----|----|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경기도 | 1 | 2 | - | 2 | - | 5 | |
| | | 서울특별시 | - | 2 | - | 2 | - | 4 | |
| | | 인천광역시 | - | 2 | - | 2 | - | 4 | |
| | 국가유공자 | | 1 | 3 | 1 | 2 | - | 1 | 8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2 | - | 2 | 1 | - | 6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2 | - | 2 | - | 1 | 6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 | 2 | 1 | 2 | 1 | - | 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 - | 5 | 1 | 5 | 2 | 7 | 20 |
|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 5 | 1 | 5 | 2 | 7 | 2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1 | 26 | 3 | 22 | 3 | 9 | 74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4 | 1 | 4 | 1 | 2 | 12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7 | 7 | 1 | 8 | 2 | 2 | 37 | |
| 합계 | | 33 | 62 | 9 | 58 | 12 | 29 | 203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46 1013 2072 1157">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이후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취소, 부적격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점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점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 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점자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내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입주자 선정이 된 이후에도 추후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하는 경우(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10:00-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하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점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0세대**

| | |
|------------------------|---|
| <p>신청자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②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자 : 경기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⑤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p>당첨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고령자, 장애인 또는 인터넷 취약자는 구비서류 지참 후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14:00)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 신청 시 당점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점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시(견본주택 방문 접수 포함) 해당기관에 최초 신청한 주택형에 대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0세대

| | |
|------------------------|--|
| <p>신청자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총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법령에 따릅니다. |
| <p>당첨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5.8.)]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거주지역요건 기준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사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 | | |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 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74세대**

| |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31.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 |
|----------|--|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120% 이하 | 6,509,453원~7,811,342원 | 7,622,057원~9,146,467원 | 8,040,493원~9,648,590원 | 8,701,640원~10,441,967원 | 9,362,787원~11,235,343원 | 10,023,934원~12,028,720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140% 이하 | 6,509,453원~9,113,233원 | 7,622,057원~10,670,878원 | 8,040,493원~11,256,689원 | 8,701,640원~12,182,295원 | 9,362,787원~13,107,900원 | 10,023,934원~14,033,506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160% 이하 | 7,811,343원~10,415,123원 | 9,146,468원~12,195,290원 | 9,648,591원~12,864,787원 | 10,441,968원~13,922,622원 | 11,235,344원~14,980,458원 | 12,028,721원~16,038,293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 [별표3]

1.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 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입주자모집공고일</th> <th style="width: 33%;">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 style="width: 33%;">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31.</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3.10.3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 | |
| 2023.10.3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462,289원~ 10,415,123원 | 9,908,674원~ 12,195,290원 | 10,452,641원~ 12,864,787원 | 11,312,132원~ 13,922,622원 | 12,171,623원~ 14,980,458원 | 13,031,114원~ 16,038,293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 세 이상인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 [별표3]

1.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
| <p>신청자격요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경기도,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12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p>청약신청 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1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 시 기입한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②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60㎡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
|------------|-------------------------------|--|
| | 전용 60㎡초과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 | |
|---|--|
| |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2)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p> |
| <p>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총점 | 84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청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제7호의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 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⑪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p>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p>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사전당첨자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thefirst)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주체에서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로서의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동·호수 배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 |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 신청방법 및 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3.11.13.(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 건본주택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정보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건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4) |
| 일반공급 | 1순위 | 2023.11.14.(화) 09:00~17: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정보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2순위 | 2023.11.15.(수) 09:00~17:30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영업점별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시 유의 사항(방문 청약 10:00~14:00)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은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며, 접수 시 아래 6번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의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내 제출)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서류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함),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증명 서류(신분증) 중 여권의 경우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5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1.22.(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 입주자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 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2023.11.22(수) ~ 2023.12.01(금)(10일간) |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3.11.22(수)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 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 자격확인 서류 제출 대상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 서류 제출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 특별공급 | 당첨자 전원 | 2023.11.23.(목) ~ 2023.11.28.(화) 6일간 10:00 ~ 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4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방문 예약제 -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홈페이지 (https://hillstate.co.kr/s/thefirst) |
| | 일반공급 | | | | |
| 예비 입주자 | 특별공급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 | | |
| | 일반공급 | | | |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thefirst>)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천참여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기간내 제출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 |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발급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발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접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또는 자녀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제출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수신 문서 가능)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제출 •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수신 문서 가능) |
| | | ○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 | | |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텍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인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일반공급 당첨자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 존·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 존·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증명서류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공문 |

| | | | | | |
|---|--|---|----------------------|---------------|--|
| 자 | | | | | · 소형·저가주택등입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 용도 :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 | | ○ | 위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견본주택 비치) |
| | | ○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서명)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증명 서류(신분증) 중 여권의 경우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②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②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국민연금공단 ②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⑤ 해당직장 ③세무서 ④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①세무서/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행정복지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건본주택 비치 ②세무서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영약신청자 본인)

| 구 분 | 해당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구분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주민센터 ③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주민센터 |

■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 구분 | 서류 유형 | |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유의 사항 등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근무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 | | ○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표시"로 발급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함

■ 계약체결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비고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3.12.05.(화) ~ 2023.12.07.(목) / 3일간 10:00 ~ 16:00 |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4) | 사전 방문 예약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홈페이지 (https://hillstate.co.kr/s/thefirst) |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유형 |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 | 필수 | 해당자 | | |
|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 ○ |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인감도장 | ○ |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계약금 입금증 | ○ | | -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 | | 본인 |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 증명서 출력 - 수입인지 구매금액 : 15만원(분양계약), 2만원(발코니 확장)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입력(인지세납부/부동산 등 소유권이전/150,000원/1건 > 테스트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오프라인 구매 시 : 은행 및 우체국 가능 |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 ○ |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수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 불가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
| | 위임장 | ○ | |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증명 서류 중 여권의 경우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명,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수입인지(단, 인지세법상 일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하나은행 | 2019-2477-090937 | 의정부금오조합,현대건설㈜ |
| 중도금 / 잔금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01-910028-78204, 의정부금오조합,현대건설㈜]로 관리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세대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건보주택, 홍보관 등)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 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 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으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 시행 규칙」제2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공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준공예정일 2025년 11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호 또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어린이집(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힐스라운지, 독서실, 작은도서관, 스테디룸),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

8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 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시 위치에 따라 유리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비확장 시에는 발코니 창 없이 내부 분합문만 설치되면 외부에는 위치에 따라 철제난간만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 주택형 | 확장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계약 시 | 추후 안내 | 입주지정일 |
| 59A | 16,670,000 | 1,667,000 | 1,667,000 | 13,336,000 |
| 59B | 18,520,000 | 1,852,000 | 1,852,000 | 14,816,000 |
| 59C | 16,190,000 | 1,619,000 | 1,619,000 | 12,952,000 |
| 75 | 21,630,000 | 2,163,000 | 2,163,000 | 17,304,000 |
| 84 | 23,380,000 | 2,338,000 | 2,338,000 | 18,704,000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적인 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실외기실)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포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희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희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장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유선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옵션 및 선택형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세대 내 발코니 확장 포함 품목(화장대 및 상판, 시스템가구, 전동식 빨래건조대, 주방가구 일부, 침실 반침장, 세탁선반,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등)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설치 위치 | 설치 개소 | 세대당 설치금액 | |
|-----|-----------------|----------------------|-------|-----------|------------|
| | | | | 옵션1(일반형) | 옵션2(고급형) |
| 36 | (기본확장형) | 침실1, 침실2 | 2 | 3,410,000 | 4,010,000 |
| 59A | 평면옵션 미선택(기본확장형)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4 | 6,710,000 | 7,91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 평면옵션 선택 시 | 거실, 안방, 침실1 | 3 | 5,060,000 | 5,96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59B | 평면옵션 미선택(기본확장형)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4 | 6,710,000 | 7,91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 평면옵션 선택 시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4 | 6,710,000 | 7,91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59C | 평면옵션 미선택(기본확장형)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4 | 6,710,000 | 7,91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 평면옵션 선택 시 | 거실, 안방, 침실1 | 3 | 5,060,000 | 5,96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75 | 평면옵션 미선택(기본확장형)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4 | 7,260,000 | 8,46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 평면옵션 선택 시 | 거실, 안방, 침실1 | 3 | 5,280,000 | 6,180,000 |
| | | 거실, 안방 | 2 | 3,630,000 | 4,230,000 |
| 84 | 평면옵션 미선택(기본확장형) |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 5 | 8,690,000 | 10,190,000 |
| | | 거실, 주방, 안방 | 3 | 5,280,000 | 6,180,000 |
| | 평면옵션 선택 시 |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 4 | 7,370,000 | 8,570,000 |
| | | 거실, 주방, 안방 | 3 | 5,280,000 | 6,180,000 |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선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36타입 침실1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2 벽걸이형 기준 1개소, 나머지 타입 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능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선품 미선택 시 홈넷과 연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 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주방 가전 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 주택형 | 위치 | 품목 | 공급가 | 비고 |
|-----------------------|----|-------------------------|-----------|------------------|
| 전주택형 | 주방 | 3구 하이브리드 쿡탑 | 400,000 | SK매직ERA-BHI30 |
| | | 3구 인덕션 | 480,000 | SK매직IHR-B3200 |
| | | 기능성 오븐 | 400,000 | LG전자MZ385EBT |
| 59A, 59B, 59C, 75, 84 | 주방 |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 키큰장 | 5,570,000 | LG오브제 (글라스 베이지) |
| | | | 5,960,000 | 삼성 비스포크 (코타 화이트) |
| | | 식기세척기 | 850,000 | SK매직DWA-9106B |

■ 추가 선택품목 - 기타 가전 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 주택형 | 위치 | 품목 | 공급가 | 비고 |
|-----|--------|-------------|-----------|-------------------------------------|
| 전타입 | 현관 |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 380,000 | |
| | 거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 2,160,000 | 전열교환 환기장치 + 천장형 공기청정기 + 통합센서유닛 |
| 전타입 | 거실, 안방 | 보이스홈 | 1,210,000 | 13인치 음성인식 월패드(거실), 빌트인 음성인식 스피커(안방) |
| | 거실 | H-BELL | 190,000 | 거실 1개소 적용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옵선품(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등)은 제조사에 따라 표면마감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선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의 가전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유상옵선품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및 마감재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 주택형 | 위치 | 품목 | 공급가 | 비고 |
|-------------------------------|---------------------------|------------------------------|--------------------------------|---|
| 36 | 현관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260,000 | |
| | 침실1, 침실2 | 조명 특화 | 4,500,000 | 리니어 간접조명(침실1) + 특화조명(침실2) |
| | 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1,610,000 | |
| |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벽체 | 1,100,000 | |
| | | 주방가구 상부장/하부장 특화 | 470,000 | 주방가구 간접조명 |
| | 침실1 | 벽체 세라믹타일 | 2,350,000 | 침실1 아트월 + 소파뒷벽 세라믹타일 |
| | 공용욕실 | 욕실 고급 특화 | 3,780,000 | 포세린 벽 + 바닥타일, 수전/도기류 고급화 + 매트블랙 샤워부스 |
| | 주방/식당, 침실1 | 바닥 포세린 타일 | 740,000 | |
| 전실 | 원목마루 | 3,690,000 | | |
| 59A, 59B, 59C | 공용욕실 | 욕실 고급 특화 | 3,500,000 | 포세린 벽 + 바닥타일, 수전/도기류 고급화 |
| | 부부욕실 | 욕실 고급 특화 | 2,890,000 | 포세린 벽 + 바닥타일, 수전/도기류 고급화 |
| 59A | 현관 | 중문 - 스윙도어 | 1,260,000 | |
| | 안방, 침실2 | H 마스터룸(대형드레스룸) | 2,760,000 | 시스템가구 |
| | | H 마스터룸(고급형 불박이장) | 9,690,000 | 슬라이딩 도어(1도어), 고급형 불박이장(조명+유리도어) |
| | 거실, 안방 | 조명 특화 | 5,400,000 | 리니어 간접조명(거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거실) + 특화조명(안방) |
| | 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2,350,000 | |
| |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벽체 | 1,730,000 | |
| | | 주방가구 상부장/하부장 특화 | 610,000 | 주방가구 간접조명 |
| | 거실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미선택 시) | 3,49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안방 복도 세라믹타일 |
| |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선택 시) | 2,97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 | 거실, 복도, 주방 | 바닥 포세린 타일 | 1,11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대형 드레스룸 | 1,05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고급형 불박이장 | 1,050,000 | |
| | 거실, 복도, 주방, 안방, 침실 1, 침실2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4,80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대형 드레스룸 | 5,00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4,62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1,52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대형 드레스룸 | 1,48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1,44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원목마루 | 8,100,000 | |
| | | 원목마루 - 대형 드레스룸 | 8,100,000 | |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7,730,000 | | | |
| 59B | 현관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320,000 | |
| | 침실2 | 침실2멀티라운지 | 880,000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 | 거실, 안방 | 조명 특화 | 5,700,000 | 리니어 간접조명(거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거실) + 특화조명(안방) |
| | 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2,450,000 | |
| |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벽체 | 1,840,000 | |
| | | 주방가구 상부장/하부장 특화 | 760,000 | 주방가구 간접조명 |
| | 거실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 | 3,15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세라믹타일 |
| | 거실, 복도, 주방 | 바닥 포세린 타일 | 1,010,000 | |
| | 거실, 복도, 주방, 안방, 침실 1, 침실2 | 바닥 포세린 타일 - 침실2 멀티라운지 | 1,01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4,77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침실2 멀티라운지 | 4,77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1,43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침실2 멀티라운지 | | 1,430,000 |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 | | |
|----------------------------------|-------------------------|---------------------------------|-------------------------------|---|
| | | 원목마루 | 7,780,000 | |
| | | 원목마루 - 침실2 멀티라운지 | 7,780,000 | |
| | 현관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290,000 | |
| | 안방,침실2 | H 마스터룸(대형드레스룸) | 2,760,000 | 시스템가구 |
| | | H 마스터룸(고급형 불박이장) | 9,690,000 | 슬라이딩 도어(1도어),고급형불박이장(조명+유리도어) |
| | 거실, 안방 | 조명 특화 | 5,400,000 | 리니어 간접조명(거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거실) + 특화조명(안방) |
| | 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2,360,000 | |
| |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벽체 | 1,740,000 | |
| | | 주방가구 상부장/하부장 특화 | 690,000 | 주방가구 간접조명 |
| | 거실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미선택 시) | 3,49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안방 복도 세라믹타일 |
| |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선택 시) | 2,97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 59C | 거실,복도,주방 | 바닥 포세린 타일 | 1,11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대형 드레스룸 | 1,04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고급형 불박이장 | 1,040,000 | |
| | 거실,복도,주방,안방,침실 1,침실2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4,80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대형 드레스룸 | 4,99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4,62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1,51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대형 드레스룸 | 1,48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1,44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원목마루 | 8,090,000 | |
| | | 원목마루 - 대형 드레스룸 | 8,090,000 | |
| |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7,720,000 | |
| |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310,000 | |
| | | H 마스터룸(대형드레스룸) | 1,920,000 | 시스템가구 |
| | H 마스터룸(고급형 불박이장) | 11,570,000 | 슬라이딩 도어(1도어),고급형불박이장(조명+유리도어) | |
| | 안방 | 슬라이딩 불박이장 | 3,890,000 | |
| | 거실, 안방 | 조명 특화 | 5,400,000 | 리니어 간접조명(거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거실) + 특화조명(안방) |
| 75 | 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3,180,000 | |
| |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벽체 | 2,300,000 | |
| | | 주방가구 상부장/하부장 특화 | 830,000 | 주방가구 간접조명 |
| | 거실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미선택 시) | 3,35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안방 복도 세라믹타일 |
| |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선택 시) | 2,78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 | 거실,복도,주방 | 바닥 포세린 타일 | 1,19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대형 드레스룸 | 1,14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고급형 불박이장 | 1,14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1,190,000 | |
| | 거실,복도,주방,안방,침실 1,침실2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5,99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대형 드레스룸 | 6,14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5,72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5,70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1,72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대형 드레스룸 | | 1,69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 1,65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 1,69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원목마루 | | 9,530,000 | | |
| | | 원목마루 - 대형 드레스룸 | 9,530,000 | |
|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9,110,000 | | |
| | 원목마루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9,240,000 | | |

| | | | | |
|---------------------|-------------------------|----------------------------------|--------------------------------------|---|
| | 공용욕실 | 욕실 고급 특화 | 3,580,000 | 포세린 벽 + 바닥타일, 수전/도기류 고급화 |
| | 부부욕실 | 욕실 고급 특화 | 3,850,000 | 포세린 벽 + 바닥타일, 수전/도기류 고급화 + 매트블랙 샤워부스 |
| 84 | 현관 |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1,270,000 | |
| | 안방,침실2 | H 마스터룸(고급형 불박이장) | 11,490,000 | 슬라이딩 도어(1도어),고급형불박이장(조명+유리도어) |
| | | H 마스터룸(멀티라운지 + 드레스룸) | 900,000 | |
| | 안방 | 슬라이딩 불박이장 | 3,890,000 | |
| | 거실, 안방 | 조명 특화 | 6,300,000 | 리니어 간접조명(거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거실) + 특화조명(안방) |
| | 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 3,190,000 | |
| |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벽체 | 2,370,000 | |
| | | 주방가구 상부장/하부장 특화 | 860,000 | 주방가구 간접조명 |
| | 거실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미선택 시) | 4,21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안방 복도 세라믹타일 |
| | | 거실 벽체 세라믹타일(H 마스터룸 선택 시) | 3,630,000 | 거실 아트월 + 소파뒷벽 |
| | 거실,복도,주방 | 바닥 포세린 타일 | 1,38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고급형 불박이장 | 1,32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멀티라운지 + 드레스룸 | 1,320,000 |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1,380,000 | |
| | 거실,복도,주방,안방,침실 1,침실2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6,73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6,88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멀티라운지+드레스룸 | 6,40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원목마루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6,44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원목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1,96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1,94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멀티라운지 + 드레스룸 | 1,88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바닥 포세린 타일 + 헤링본마루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1,930,000 | 거실,주방,복도 : 포세린 타일/침실 : 헤링본마루 |
| | | 원목마루 | 10,820,000 | |
| 원목마루 - 고급형 불박이장 | | 10,820,000 | | |
| 원목마루 - 멀티라운지 + 드레스룸 | | 10,340,000 | | |
| 원목마루 -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 | 10,530,000 | | |
| 공용욕실 | 욕실 고급 특화 | 3,580,000 | 포세린 벽 + 바닥타일, 수전/도기류 고급화 | |
| 부부욕실 | 욕실 고급 특화 | 3,840,000 | 포세린 벽 + 바닥타일, 수전/도기류 고급화 + 매트블랙 샤워부스 | |

- 유상옵션 미선택에 따른 기본사양은 견본주택에 비치 된 마감재리스트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마감 선택 미선택 시 기본제공 강마루입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 가구 구성과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특화(유상옵션)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로 인해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및 평면형 옵션에 포함된 슬라이딩 도어는 내부 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닥 포세린 타일(유상옵션)은 자재 특성상 사이즈, 줄눈, 평활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체(유상옵션)은 이음매가 육안상 보일 수 있으며, 줄눈니누기 및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바닥 수입타일 경우 수입타일 자재 특성상 커팅타일 기준으로 벽 바닥 타일 사이즈 및 줄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선택형 평면(유,무상)에 따라 가구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거실 리니어 간접조명 및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등은 천장 길이에 따라, 조명이 분절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 리니어 간접조명 + 거실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등 + 안방 특화조명이 일괄로 설치되며, 거실 및 안방 기본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조명의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상이하오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 시 거실 10인치 월패드가 13인치 음성인식 월패드로 변경 설치되며, 거실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가 거실 또는 주방에 별도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일정(금액)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 계약 시 | 추후 안내 | 입주지정일 | |
| 추가선택 품목 납부일정 및 금액 | 10% | 10% | 80% | |

•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하나은행 | 2019-2477-590037 | 현대건설(주) |
| 중도금 / 잔금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01-910028-76004,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

| 항목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고기밀 창호 | 적용 | ·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부위의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2등급이상제품 적용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전동기) · 표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변압기)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절수설비 | 적용 | · 세대내 수도꼭지 및 샤워수전은 관련법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최초사업시행인가 (2012.12월)</div> | |
|---|--|
| 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의정부시고시 제2012-153호 | |
| 규모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 |
| 2017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 |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 |
| 4. 주요내용 | |
| 가. 적용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건축물로 하고 면적별도 제외하여 규모별로 적용기준 수립 | |
| -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연면적 합계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규모별로 4가지로 구분 | |
| 나.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성 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의 정체를 규모별로 차등 적용 | |
| - 친환경건축 부분 에서는 쾌적한 거주환경과 저유기능한 친환경적 생태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사항 을 규정 | |
| - 에너지부분 에서는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절약제도,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 계량기, LED조명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 | |
| - 신재생에너지 부분 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건축물 규모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규정 | |
| 5.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 | |
|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허허 결의 신청건부터 적용 | |
| 의 정 부 시 장 | |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규모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의정부시 갈매동 65-3번지 일원 나. 면 적 : 32,909.00㎡(면적 : 25,062.9㎡, 정비가능면적 : 7,4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양호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의정부시 갈매동803-13 이마트와지300호 다. 포 화 장 : 홍준석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녹색건축 예비인증서</div> | |
|--|--|
| 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 |
| 4. 주요내용 | |
| 가. 적용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건축물로 하고 면적별도 제외하여 규모별로 적용기준 수립 | |
| -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연면적 합계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규모별로 4가지로 구분 | |
| 나.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성 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의 정체를 규모별로 차등 적용 | |
| - 친환경건축 부분 에서는 쾌적한 거주환경과 저유기능한 친환경적 생태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사항 을 규정 | |
| - 에너지부분 에서는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절약제도,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 계량기, LED조명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 | |
| - 신재생에너지 부분 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건축물 규모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규정 | |
| 5.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 | |
|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허허 결의 신청건부터 적용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div> | |
|---|--|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기성검토보고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
| *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 건축물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지해 알려드립니다. | |
| 등 급 | 예비인증 2등급 |
| 분 야 별 평가 결과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270.59 MJ/m ²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5.18 kgCO ₂ /m ² ·년 총에너지절감률 35.88 % |
| 인증 번호 | 13-공-에-2-0190 |
| 건축물명 | 의정부 규모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
| 소재지주소 | 경기 의정부시 갈매동 65-3번지 일원 |
| 2013년 10월 1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div> | |
|--|--|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호: 주택건설통과규정) [시행: 2013. 8. 15.] [태형명: 제 2013. 203. 8. 12. 타형: 2013. 10. 15.] | |
| 부 칙 (태형명: 제2069호, 2016. 12. 8.)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다소공급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준하는 규모 이하의 모든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정확하게 개발), 제46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계획 가결후 3개월 이내에 면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허가공과(공과주택)만 적용한다. | |
|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호 단서제 다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사항</div> | | | |
|---|--------------------------------|---------------------|-------|
| 의정부시 고시 제 2017 - 246 호 | | | |
| 의정부 양호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 5차 및 5차별도인 고시 | | | |
| 경기도 제정 고시 제 2010-0170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고시 제2012-36호 변경(1차), 의정부고시 제2012-121호 변경(2차), 의정부고시 제2013-46호 변경(3차), 의정부고시 제2015-181호 변경(4차) 고시된 「의정부 양호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5차)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도시이용규제분담금 제8호 제2항 규정에 의거해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
| 2017년 12월 14일 의 정 부 시 장 | | | |
| * 추가용적률 제척내용 | | | |
| 구 분 | 계척내용 | 추가용적률 | 적용여부 |
| 건물경 관용적률 | ■최우주 (74명이상) | 6% | 적용 |
| 에너지절감형 건축 | 간-에너지절약 등급 활용률 총 에너지절감률 35% 이상 | 5% | 적용 |
| 공적용적률 | 주거지역 5%이상 | 1% | 적용 |
|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 소형분양주택(60㎡) 건설비율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 산지에 허가부여 비율 (30.0%) | 적용 |
| 계 | - | - | 55.0% |

※ 당 사업지는 의정부시고시 제2012-153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2012.12.07.) 현장입니다.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적용시기 2017. 9월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건부터 적용으로 당 사업지 사업승인시행인가일(2012.12.07.)에 따른 시행일 이전 현장으로 제외대상 현장입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부칙<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단서조항 제3조 따라 당 사업지 사업승인시행인가일(2012.12.07.)에 따른 시행일 이전 현장으로 제외대상 현장입니다.

※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사항 (상한용적률 250% + 5%(에너지절감형 건축) + 20%(소형분양주택건설비율-의정부고시 제2017-246호에 고시된 비율적용) = 275%)

| 구 분 | 계획내용 | 추가용적률 | 비고 |
|-------------|-------------------------------|-------|--|
| 에너지절감형 건축 | 총 에너지 절감률 35% 이상 | 5% | 총 에너지 절감률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등급을 받은경우에 한함.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첨부) |
|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 소형분양주택(60㎡) 건설비율이 35% 초과하는 경우 | 20% | 도시정비사업에 한함 |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공개 합니다.

| 구분 | 내진능력(MMI 등급) |
|---------|--------------|
| 메르칼리 등급 | VII-0.169g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따라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2 2019.01.16.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및 차로의 높이가 2.7m로 적용 되는 법령으로 본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2012.12.07.)로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및 차로의 높이는 2.3m가 적용 되나,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행 기준 법령 적용 하여 103동에 위치한 지하 2층 출입구를 택배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2.7m 높이로 적용하였으며, 111동에 위치한 지하 1층의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3m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층, 지하 3층 |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3m |
| 지하 2층 |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7m |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12023-101-00040000호 | ₩117,780,04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
| 회 사 명 |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 대원포비스(주) | (주)재원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2,178,664,400원 | 659,532,255원 | 653,400,000원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구 분 | 시행사 | 시공사 |
|--------|------------------------------|----------------------|
| 회사명 |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대건설(주) |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80-13 이룸프라자 3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 법인등록번호 | 280271-0003350 | 110111-0007909 |

■ 일반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 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수입인지(단, 인지세법상 일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이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 본인은 소유권 이전 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 본인이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합니다.(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분양대금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계약자 본인이 시공자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 본인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휴대폰문자서비스(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지지 않습니다.

■ 인허가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주택법」제60조3항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상호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도심경관의 역사·문화성 강조를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의 도심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경관계획 기준으로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계획

- 세대내 층간바닥구조는 최초 인허가 시점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바닥구조에 근거하여 설치 될 예정이고, 차음 성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구조 등은 동등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 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입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 - 0.169g 입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중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뚝급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인근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 위치에는 교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인 및 소형주택(임대) 입주인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 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본인은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금오초등학교 배치 가능, 중학교, 고등학교는 단일학군(광역배정) 내 분산 배치 가능하나,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문주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가 설치되지 않은 주출입구는 문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은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출눈은 시공상의 이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 및 커튼월록 인접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여성전용,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 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 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 시 6~9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 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리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지상층 및 주동 지붕층에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 차이 및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지상 기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또는 계약자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 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일부실의 전망강화형 창호에 설치된 유리난간은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리난간이 없는 다른 창호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유리난간 일체형 외부창호는 난간의 반대편 창이 고정창으로 설치됩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 허가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은 보행자 출입구가 101동 북측 1개소, 104동 북측 1개소가 설치되며, 단지 서측은 103동 남측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와 111동 남측 지하 2층 주차장 진입로가 설치 됩니다.

■ 주변현황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 상 남측과 북측의 고저차로 인한 일부 일조·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 등에 의한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환풍/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빛공해·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중로 3-23호선 15m 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와 일부 지역에 가드웬스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 예정이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소로 2-334호선 8m 도로의 경우 개설 예정으로 보행 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 예정이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가드웬스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중로 3-334호선 12m 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와 가드웬스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 예정이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소로 1-71호선 10m 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와 일부 지역에 가드웬스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 예정이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주차출입구, 옹벽,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사생활권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방안전매트 구간과의 간섭, 소방차 등 각종 서비스 차량동선의 간섭으로 인하여 빛공해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부 및 주차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되며 동별로 설치 여건 및 보관 가능한 개소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관소 설치로 인하여 일부 통행에 불편 및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자전거보관대의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는 2개층형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로 자전거보관대의 사용 여건은 상이할 수 있음. 자전거보관대와 인접하여 퍼스널모빌리티(킥보드 등)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마련될 수 있으며 해당 구획에 대한 사용 여건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분진·빛공해·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운영으로 헬기 이착륙 및 구급차 이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과 동측에 분묘, 송전탑 등이 입지하므로 조망·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묘개장(이장),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이설 불가능 합니다.
- 단지 동측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및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어 빛공해·소음·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의정부소방서가 위치하여 소방차, 구급차 출동으로 인한 빛공해·소음·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 101동 남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로비, 화장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서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로비, 화장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재활용분리수거함,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분리수거함은 101동 남측과 서측 2개소, 102동 동측과 북동측 2개소, 103동 북측 1개소, 104동 북측 1개소, 105동 북서측 1개소, 106동 북동측 1개소, 107동 북측 1개소, 108동 북서측과 109동 동측 사이 1개소, 110동 북측 1개소, 111동 북측 2개소, 어린이집 남서측 1개소 등 총 14개소 설치 예정이며,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4동, 105동은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109동, 110동, 111동은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은 소공원이 인접하여 소음·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사생활권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105동, 106동은 경로당이 인접하여 소음·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107동, 108동은 어린이집이 인접하여 소음·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108동, 109동은 커뮤니티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이 인접하여 소음·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 110동, 110동은 커뮤니티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이 인접하여 소음·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은 맘스스테이션이 인접하여 소음·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사생활권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10동은 소형주택(임대) 및 일반분양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임대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110동의 경우 단지 북측과 동측의 0.5m~4.0m 옹벽 및 산벽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진동·분진·빛공해·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의 경우 단지 북측과 동측의 0.5m~4.0m 옹벽 및 산벽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진동·분진·빛공해·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 단지 커뮤니티(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경로당, 스테디룸, 작은도서관, 힐스라운지,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내 이용시설은 조합과 협의하여 이용시설 항목,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평면, 가구, 마감재)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36타입은 복도식 구조입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거나, 이어지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줄눈나누기 및 두께, 간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9B타입에 한하여 주방 발코니 문폭, 주방상판폭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방 발코니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고 냉장고장은 수납공간이 없으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구 및 시스템가구의 디테일 및 하드웨어, 약세사리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철재방화문(현관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하부실,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됩니다.

- 픽처레일에 사용되는 와이어 및 고리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내부 등 주방 가구 디자인은 운수분배기 설치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 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필로티 상부)는 인허가협의를 통해 하향식 피난구가 삭제되거나, 다른 피난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상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등 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운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36타입 침실1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2 벽걸이형 기준 1개소, 나머지 타입 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 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체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에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가 설치되며, 수납공간이 제한됩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보일러의 연도시공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살균정화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장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59A/B/C 타입의 경우 욕실2(부부) 샤워부스가 설치되지 않으며, 부부욕실 고급 특화 (유상) 옵션에도 샤워부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H 마스터룸 대형 드레스룸 유상 옵션 (59A/59C/75 타입 해당) 선택 시, 출입문은 가구 도어로 설치됩니다.
- H 마스터룸 고급형 붙박이장 유상 옵션 (59A/59C/75/84 타입 해당)/멀티라운지+드레스룸 형 유상 옵션 (84 타입 해당) 선택 시,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 됩니다.
- 중문 설치에 따라 신발장 내부 길이 및 구성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59A 타입은 양개형 중문이 설치됩니다.
- 타입별 상이한 사이즈의 욕실 계획으로 벽,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쪽타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및 주방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의 패턴은 나누기,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또는 분절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 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 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 확장 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 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 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 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 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 후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깊이가 세탁기(가전)보다 얇거나 세탁수전 설치로 인하여 세탁기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 배관이 천장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창호는 삼중유리 단창으로 설치 됩니다.

■ 전기기계설비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또는 세대통합분전반(세대분전반+세대단자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 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되며,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또한 스마트 주방거치대의 전원은 후면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하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홈투카(유상옵션)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 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 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 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은 건립타입과 창호위치, 가구/주방 배치, 마감적용부위 및 형태 등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시 견본주택 방문, 상담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 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사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는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비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모형 및 CG상의 커튼월록 색상, 디자인, 그리드 및 규모 등은 실시공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안내

- 본 아파트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2항 나목의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으로 현행 적용 되는 관계법령의 시행일과 본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 차이에 따른 관계법령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의정부시고시 제2012-153호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일(2012.12.07.)로 관계법령이 적용된 현장으로 현행 기준 법령 일자가 아닌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적용 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와 관련법령 준수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적용이 아닌 현행 법 기준으로 일부 적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금오생활권1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은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공원이 아니므로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등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4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 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thefirst>
- 분양문의 : ☎ 031-852-9805